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20
----------	-------

발의연월일 : 2026. 6. 23.

발 의 자 : 박성훈 · 서일준 · 송언석
김은혜 · 김성원 · 조은희
김정재 · 임이자 · 박수영
이종욱 · 김장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면제 특례가 종료되어 전산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세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8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5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생략)</p> <p>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으로서 <u>2026년 12월 31일까지</u>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p> <p>1. ~ 3. (생략)</p> <p>⑨ (생략)</p>	<p>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p> <p>⑧ ----- -----<u>2029</u> 년 12월 31일-----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⑨ (현행과 같음)</p>